

국토교통R&D 기술료 제도 안내

2026. 5. 21.(목)



성과확산실 기술료 제도

CONTENTS



I 기술료 제도의 개요

II 기술료 제도의 운영

01 목적 및 정의

 목적

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·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, 연구개발 재투자율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

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→ 연구개발성과 → 기술이전·사업화 → 기술료 징수 →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

 정의

▶ **연구개발성과를 실시**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)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“**기술료**”라 함

* “**연구개발성과**”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, 시설·장비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

02 연구개발성과 소유

◆ 연구개발성과 소유

- ▶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, 시행령 제32조)

* (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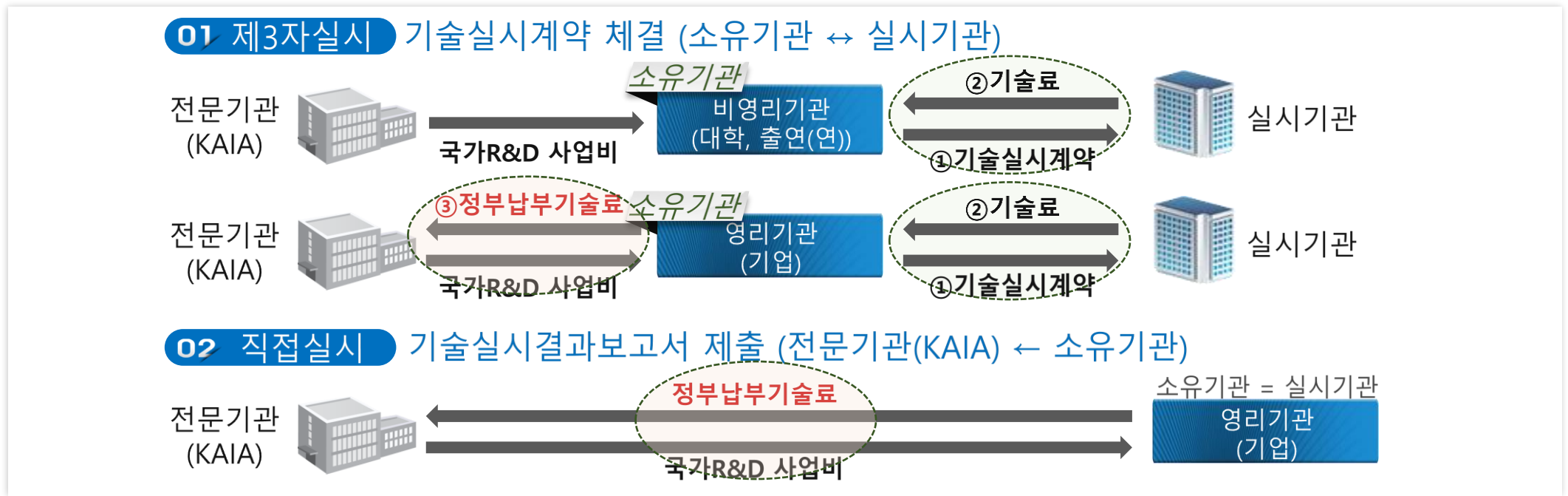
◆ 관련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 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8조 (기술료의 납부), 제39조 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), 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, 제41조(기술료의 사용)
- 「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제37조의2(기술료 관리 등)
- 「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 제47조(기술실시계약), 제48조(정부납부기술료 징수), 제49조(기술료의 징수), 제50조(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)

03 연구개발성과 실시

연구개발성과 실시유형

제3자실시(연구성과소유기관≠실시기관)	직접실시 (연구성과소유기관=실시기관)
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 (제3자)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(기술실시계약체결)	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 하여 수익(매출)이 발생한 경우



01. 기술료 제도의 운영

◆ 기술료 징수

- ▶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**기술료를 징수**하여야 함.

◆ 정부납부기술료 납부

- ▶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**기술료를 징수**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**직접 실시**하는 경우 **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**하여야 함.

*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(중소/중견/대기업 등)으로,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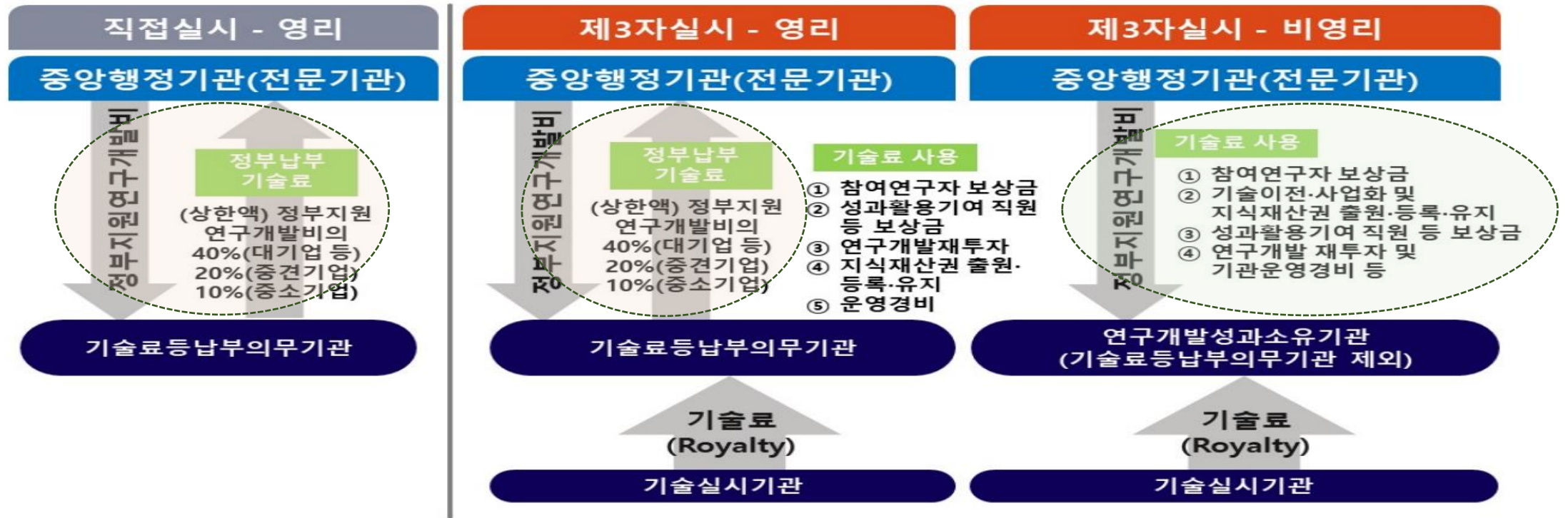
◆ 기술료의 사용

- ▶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**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,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, 운영경비** 등에 사용

※ **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용도 및 비율(필수)**: 정부지분기술료의 ① 60% 이상(참여연구원 보상금), ② 15% 이상(기술이전·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), ③ 10% 이상(성과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), ④ 나머지 금액

II 기술료 제도의 운영

02.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



- ▶ 비영리기관(제3자실시):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징수·사용실적 보고 의무 존재하며, 징수한 기술료는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.
- ▶ 영리기관(직접실시&제3자실시): 기술실시결과,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징수·사용실적 보고,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 존재

0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(영리기관만 해당)

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

구분	제3자실시(연구성과소유기관≠실시기관)	직접실시 (연구성과소유기관=실시기관)
납부 기준	기술료 징수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	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기술료 징수액 × ② 요율</p> <p>① (기술료 징수액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</p> <p>② (요율)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(중소 2.5%, 중견 5%, 대기업 등 10%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 × ② 기술기여도 × ③ 요율</p> <p>① (수익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</p> <p>② (기술기여도) '수익(매출액)'기준에 따른 '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' 과 '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&D투입이 차지하는 비중' 을 고려하여 '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'</p> <p>③ (요율)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(중소 2.5%, 중견 5%, 대기업 등 10%)</p>
예시	<p>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료를 1억원 징수받았을 경우(중소기업)</p> <p>정부납부기술료(중소): 2,500,000원</p> <p>(산정식) 100,000,000원(기술료 징수액) × 2.5%(요율) = 2,500,000원</p>	<p>★ 연구개발성과의 직접실시로 1억원의 수익(매출)이 발생하였을 경우(중소기업) 단,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(100%),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&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(75%)인 경우 기술기여도 75%(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</p> <p>정부납부기술료(중소): 1,850,000원</p> <p>(산정식) 100,000,000(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) × 75%(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 × 2.5% (요율) = 1,875,000원</p>

II 기술료 제도의 운영

0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

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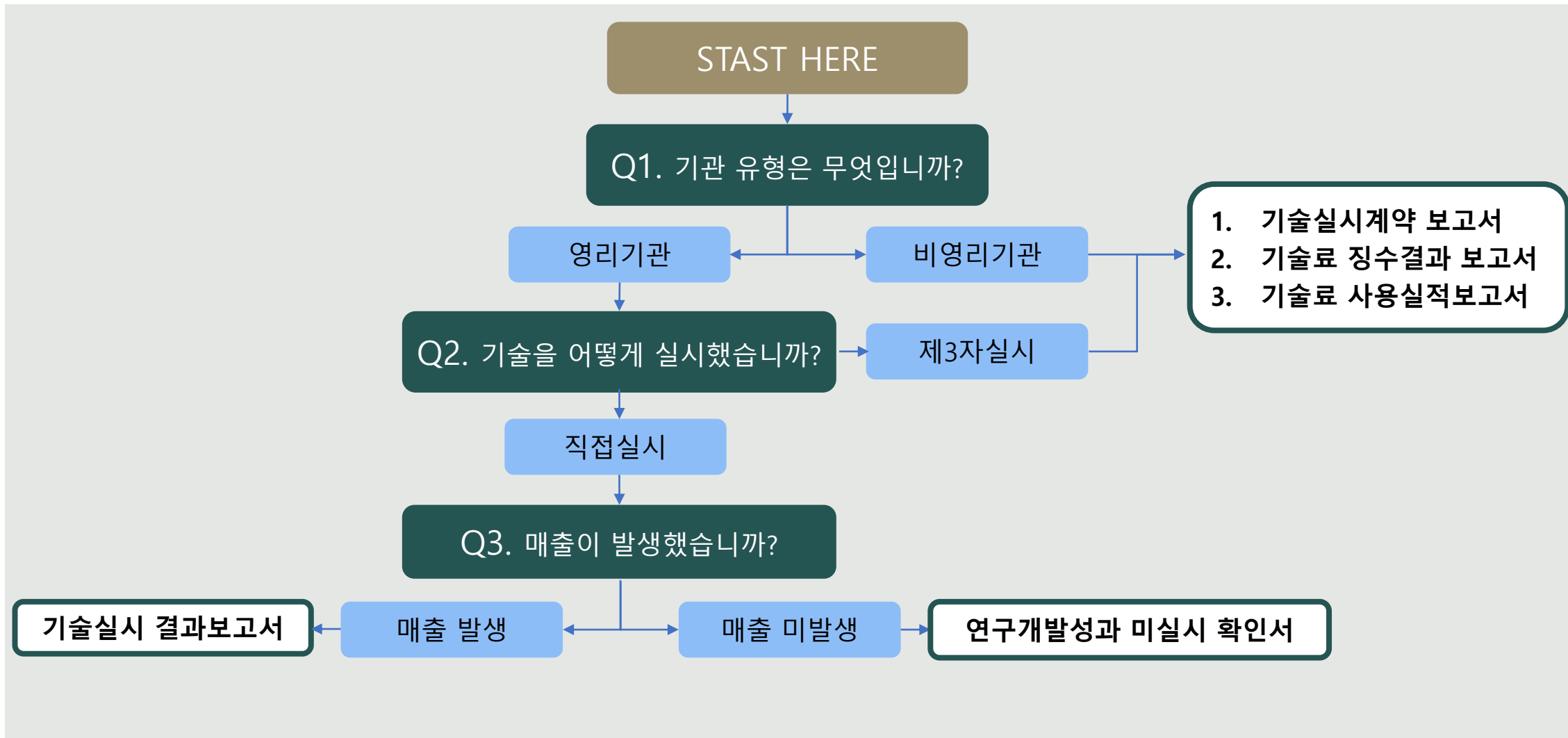
분류*		부과기준		기술료율	기술료 납부 상한
제3자 실시	중소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·공기업	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직접 실시	중소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·공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*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

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

- ▶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**90일 이내**
- ▶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**5년이 되는 날**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**종료된 날부터 7년**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04 기술실시결과 보고



04 기술실시결과 보고(비영리): 제3자실시

01

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

- (기술실시계약 체결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
 - (계약조건 상호협의를) 실시권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납부방법
- (전문기관 보고)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[별지22] 기술실시계약보고서' 제출

02

기술료 징수 및 보고

- (기술료 징수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
- (전문기관 보고) 기술료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[별지23]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' 제출

03

기술료 사용실적보고

- (기술료 사용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
- (전문기관 보고) 다음년도 2월까지 [별지27]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외) 제출

04 기술실시결과 보고(영리): 제3자실시

01

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보고

- (기술실시계약 체결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
 - (계약조건 상호협의) 실시권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납부방법
- (전문기관 보고)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[별지22] 기술실시계약보고서' 제출

02

기술료 징수 및 보고

- (기술료 징수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.
- (전문기관 보고)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[별지23]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' 제출

03

기술료 사용실적보고

- (정부납부기술료 납부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
- (납부대상기간)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- (기술료 사용)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술료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
- (전문기관 보고) 다음년도 2월까지 [별지27]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 제출

03 기술실시결과 보고(영리): 직접실시

01

기술실시
결과보고

- (기술실시결과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(매출)이 발생
- (전문기관 보고) 수익(매출)발생 다음해 6월 30일까지 [별지24]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 제출

02

정부납부
기술료 납부

- (정부납부기술료 납부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(매출)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
- (납부대상기간)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

* '25년 매출발생시(납부대상 기간 : '26년 ~ '30년, 5년)

매출발생('25.1~'25.12)

- 연구개발성과매출

'25년 매출보고(~'26.6.30)

- 기술실시결과보고서 전문기관 (KAIA)에 제출

정부납부기술료 납부
('26.7~'26.12)

- 납부고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

감사합니다.

031-389-6353

mhbaek@kaia.re.kr

백명휘 수석연구원

